

아동수당 안내



아동수당 대상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7세 미만: 0~83개월



아동수당 지급

지급액 :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아동의 행복지관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1.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앱(APP)
-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

3.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Q&A 신청서식 다운로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ihappy.or.kr

아동수당 신청 QnA

Q1.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1.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Q2.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Q3.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나요?

A3.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니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권리현장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할 권리,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



아이가 행복할 권리,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행복권리’

